

2020년 11월 10일

해양경찰청장

구 분	내용 및 기준
체 격	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.
시 력	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이어야 한다.
색 신 (色 神)	정상 또는 색약(약도)이어야 한다. 다만, 항공·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. *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(부정행위로 처리,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)
청 력	청력이 정상[좌우 각각 40데시벨(dB)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]이어야 한다.
혈 압	고혈압·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. (확장기 90 ~ 60mmHg, 수축기 145 ~ 90mmHg)
문 신	시술동기,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,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 *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 (부정행위로 처리,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)

다음 페이지 계속

2) 체력검사

- 종목 : ① 100미터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50미터 수영
- 매 종목 실격 없이 **총점(30점)의 40% 이상(12점)**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①~③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.
- ④ 종목의 경우에는 기준(남자 130초, 여자 150초 이내) 미달 시 불합격으로 합니다.
- 기타 평가기준은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별표5(별첨)에 따릅니다.

※ 도핑테스트 실시 : 응시생의 7%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(별첨)

라. **서류전형** :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.

마. **면접시험** :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발전가능성,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(10점), 면접평가(10점), 가산점(5점)을 합산하여 **총점(25점)의 40% 이상(10점)**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
※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처리

7. 시험 가산점

가. 취업지원대상자

- 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합니다.

※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2)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- 3)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※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(☎1577-0606)

나.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

- 1)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」 별표4(별첨)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2)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,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.
- 3) 어학능력 자격증은 **최종시험예정일('21.3.17.)을 기준으로 2년 이내** 것만 인정됩니다.
- 4)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.

※ **가산 자격증 사본을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.**

8. **최종합격자 결정** : 실기시험(50%), 체력검사(25%), 면접시험(25%)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* 관련근거 :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3조(시험의 합격결정) 제3항1호

※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(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)의 의무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(관련근거 : 「경찰공무원법」 제9조(채용후보자 명부) 제4항)

9. 교육 및 임용

가. 교 육 : 2021년 4월 17일 해양경찰교육원 입교(예정)

※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.

※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이 불가한 경우,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. (관련근거 :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19조(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))

나. 임 용 :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입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

※ **특임(구급)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다른 지방해양경찰청으로 10년 간 전보가 제한됩니다.**

10. 제출서류

가. 실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시 추가(보완)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**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.**

11. 유의사항

가.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다. **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(응시연령, 가산점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**

※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-1호 참조

라.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**응시표**와 **신분증 원본**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여권)을 소지하여야 하며 **응시표,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 아울러, 위에 열거한 신분증 외 **학생증, 자격수첩**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마. **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**

바.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『채용공고』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gosi.kcg.go.kr>)에 게재 예정이며, 응시자는 시험시간, 장소,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※ **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
사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.

※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.

아. 색약(약도)자의 경우 경찰병원,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(색각경)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**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**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자.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차.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*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」 [별지 제9호]에 따른 「채용후보자 등록원서」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17조(채용후보자의 등록) 제2항에 따라 **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**합니다.

카. **해양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·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,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타.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(www.mpm.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**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**

파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하신 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중부지방청 : ☎032-728-8716, 8916

서해지방청 : ☎061-288-2416, 2521

남해지방청 : ☎051-663-2416, 2616

동해지방청 : ☎033-680-2416, 2716

제주지방청 : ☎064-801-2416, 2221